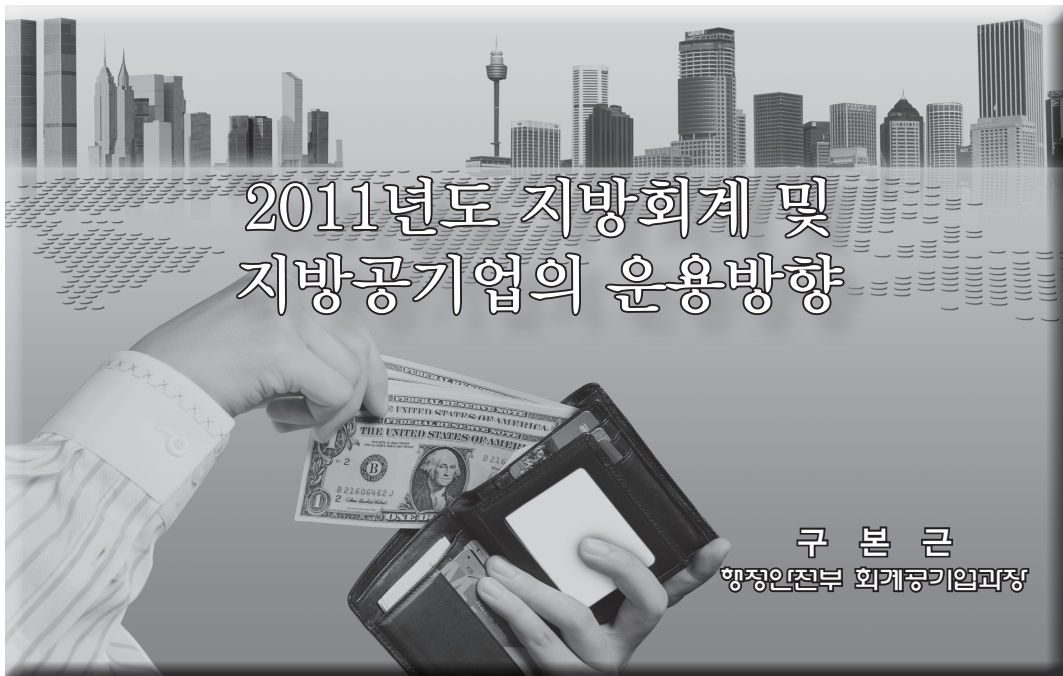




I. 머리말

최근 들어 지방재정의 위기를 이야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가정으로 치면 ‘돈 들어갈 곳은 갈수록 많은 데, 수입은 줄어들거나 기껏해야 제자리 걸음에 그친다’고 비유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저출산 · 고령화’ 추세가 진전됨에 따라 사회복지를 비롯한 지방재정 수요는 갈수록 증가하는 데 반해,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세입 여건은 크게 호전되지 않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처럼 지방재정을 둘러싼 대내 · 외적 여건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은 한정된 재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많은 성과를 창출하느냐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부는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예산 편성 · 집행 · 결산 등 지방재정

운영의 전 과정에 걸쳐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특히 지방계약제도를 선진화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이루어 지도록 하고,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를 정착시키는 등 지방재정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있다.

아울러, 지방재정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공기업의 효율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지방공기업선진화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그간 지방회계 및 지방공기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최근 환경변화를 고려한 2011년도 지방회계 및 지방공기업 운용방향을 소개하고자 한다.

II. 지방회계 및 지방공기업 운영현황

1. 지방회계 분야

가. 지방계약제도 운영

지방계약제도는 그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왔으나, 지속적인 지방재정 규모 증대 및 ‘생활 쓰레기 처리’ 등 국가와 구분되는 자치단체만의 계약 유형 반영 필요 등의 사유로 국가계약법과 구분되는 독자적인 법률 제정이 요구되게 되었다.

이에 따라, 舊 행정자치부는 2005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을 제정하여,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고 현재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은 물론 공립학교, 지방공기업 등 약 12,000여 기관에 적용하고 있으며, 계약 규모도 2008년 기준 24조원으로 국가의 12조원에 비해 약 2배 정도로 적용기관과 계약 규모 모두 국가를 능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지방계약법령은 지방재정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국가계약법령과 달리 지방의회 의원의 수의계약 금지, 재해복구사업의 개산계약제도 도입,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활성화, 지방중소업

체 보호를 위한 지역제한 대상금액 상향 조정, 지방계약심의위원회 설치 의무화 등을 추진하여 시행한 결과 자치단체 특성을 반영하고 계약 투명성도 높이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어 왔다.

특히, 2010년에는 지방계약제도를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해 효율적이고 투명한 재정집행에 기여하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2010. 7.26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불요불급한 수의계약 조항은 폐지하고, 최저가 낙찰제 적용대상 공사를 300억 원 이상에서 100억 원 이상 공사로 확대(2012년부터 시행) 하였다.

또한, 前 근대적 보증방법인 ‘연대보증인 제도’를 폐지하고, 계약보증금 면제대상도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높이는 등 지역 중소기업체의 부담을 덜어주는 등 규제개선도 아울러 도모하였다. 하지만, 아직도 통합하여 발주가 가능한 유사사업을 자치단체별로 따라따로 발주를 하거나, 한 건의 사업으로 발주가 가능함에도 사업을 나눠 분할발주 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으며, 300억 원 이상 대형공사의 경우 최저가 낙찰방식보다는 일괄입찰방식 위주로 발주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이외에도, 잦은 설계변경을 통한 계약금액 증액 관행 등 지방계약과정에서 개선할 여지가 아직도 많다고 판단되며, 이를 위해서는 조달청으로 대표되는 국가기관의 계약조직에 비해 전문성 · 효율성이 떨어지는 지방계약업무 추진체계를 효율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5년여 간의 제도운영 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하고 앞으로 환경 변화 등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지방계약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지방계약제도 선진화’가 정착되는 해로 만들어 갈 계획이다.

나. 재무회계제도 운영

기업회계의 발생주의 · 복식부기를 정부회계에 이식한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제도는 지방분권추진에 관한 특별법(舊 지방분권특별법) 및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두고 하위규정인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운영규정(舊 지방자치단체 발생주의 · 복식부기 회계처리지침)」을 기초로 하고 있다.

1999년 부천시, 강남구 등에서 복식부기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05년에는 쏘 지방자치단체가 시험 운영을 실시하였다. 2007년 1월 1일부터 법령에 따라 쏘 지방자치단체가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원 리에 기반하여 재무보고서를 작성하고 그 결과를 매년 8월말에 공시하고 있다.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와 운영결과에 대한 통합 재정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현행 현금주의·단식부기¹⁾에 의한 세입세출결산서 외에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에 의한 재무보고서를 작성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재무보고서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 후 결 산 감사위원회 제출 및 지방의회 승인을 거쳐 지역주민들에게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재무보고서 활용 및 유용성에 대한 요구에 대응하여 행정안전부는 2010년 12월 「지방자치단 체 원가계산준칙(행정안전부 훈령 제185호)」을 제정하였고 이를 성과관리 및 예산편성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지방공기업 분야

지방공기업은 상·하수도, 지하철, 임대주택, 공공시설 운영 등 주민생활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공공서 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주민의 욕구와 수요의 증가에 따라 매년 그 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특히, 1999년 지방공기업의 설립허가권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이후 그 수가 급속히 증가하여 1999년 218개이던 지방공기업은 2010년 12월말 현재 382개로 무려 164개가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지방공기업의 예산규모와 종사인력의 수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9년도 결산결과 예산규모는 48조 7,309억 원이며 종사인력은 63,673명으로 지역경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1) 현금의 수입과 지출에 한정함으로써 일정기간의 사업성과와 일정시점의 재정상태 파악 불가, 자산의 비용화 개념(감가 상각비)이 없어 기간별 성과와 자산의 교체시기에 대한 정보제공 곤란, 지자체간 또는 조직단위간 투입비용과 정책성 과 비교 곤란 등의 문제점이 있어 보완적인 제도로서 발생주의·복식부기회계제도 도입하였다.

특 집

2011년 지방재정 · 세제정책 운영방향

〈 지방공기업 운영현황(2009년도 결산결과) 〉

구 분	계	직영기업	공사 · 공단
공 기 업 수 (개)	382	245	137
종 사 자 수 (명)	63,673	15,519	48,154
예산규모(억원)	483,309	170,736	316,573

※ 지방공기업 수는 2010년 12월말 현재 기준

최근 지방공기업의 급격한 성장추세와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할 때 지방공기업이 미치는 영향력은 지역경제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에도 지대하다고 할 것이다.

그동안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경영효율화를 추진해 왔으며 특히, 2009년부터 지방공기업 선진화계획을 마련하여 지방공기업에 대한 총체적인 진단을 통해 부실하고 방만한 지방공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지방공기업의 자율 · 책임운영 체계 정착을 위해 운영체계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방공기업 경영효율화 추진에도 불구하고 지방공기업 부채의 과다에 따른 재정건전성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무분별한 사업확대 및 외연확대를 위한 타법인 출자 등 지방공기업의 방만 경영에 대한 우려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점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지방공기업이 당면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지방공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공기업 선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Ⅲ. 2011년 지방회계 및 지방공기업의 운용방향

1. 기본방향

가. 지방회계분야

어려운 지방재정여건을 감안해, 지방계약제도는 효율적인 재정집행을 지원할 수 있게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금년도 국정 핵심과제인 ‘공정사회 및 친서민’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도 지속적으로 마련할 것이다.

또한 2010회계연도 결산을 마무리한 후 원가계산준칙을 적용한 재정운영보고서를 일부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추가로 시범작성하고, 예산회계결산(세입세출결산서)과 재무회계결산(재무보고서) 등의 결산서를 통합, 체계화하고 결산절차를 일원화하여 결산체계를 선진화할 계획이다.

나. 지방공기업 분야

2011년도 지방공기업의 운용방향은 기존의 지방공기업 선진화방안에 따른 구조조정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그간 부채의 지속적 증가에 대응한 지방공기업 재정건전성 제고를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다. 지방공기업의 부채관리 강화, 성과중심의 경영평가 및 경영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공공성과 기업성의 조화로운 구현을 이루고, 나아가 고객만족과 성과창출의 일류 지방공기업으로 육성해 나갈 것이다.

2. 중점 추진사항

가. 「지방계약제도 선진화」 추진

1) 지방계약 전(全)과정을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개, 자율적 감시체계 마련

현행 지방계약법령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발주계획²⁾과 수의계약 내역³⁾은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금지급 상황, 감독·감리자 현황 등 기타 계약과정은 대부분 자치단체의 경우 공개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2)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24조에 따라 분기별 발주계획(사업명, 발주물량 또는 규모, 예산액 등)을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공개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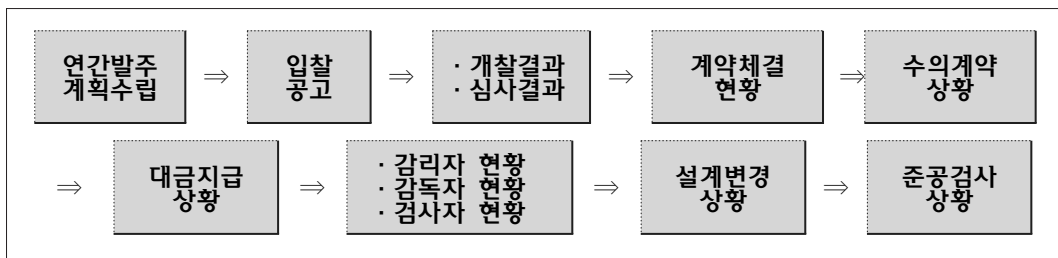
3)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계약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인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월별 수의계약내역을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 수의계약내역(계약사업명 및 계약이행기간, 계약상대자의 대표자 성명, 상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예정가격 및 계약금액, 법령상 수의계약의 근거 등)을 해당 자치단체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공개기한은 계약이행 완료일로부터 1년 이상으로 함

이에 따라, 일반인들은 해당 자치단체의 사업에 대한 계약 전과정을 일목요연하게 알기가 어려웠으며 특히, 해당 사업의 하도급자의 경우 원도급자가 발주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았는지 여부는 물론 지급받았다면 정확한 지급일 등을 알 수 없어 원도급자가 대금지급을 지연시켜도 정확한 정보를 알 수가 없는 실정이었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발주계획부터 대금지급 상황까지 지방계약의 전과정을 해당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지방계약법 개정안에 그 근거를 마련하여 금년 상반기중 국회에 제출하고 빠르면 금년 하반기부터 시행되도록 할 예정이다.

동 방안이 시행되면 하도급자의 신속한 대금 청구는 물론 누구나 자치단체 사업추진현황을 쉽게 알 수 있어 계약과정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문제점 등을 상시 모니터링 할 수 있어 자율적인 감시기능이 획기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계약과정 공개 순서(안) 〉



2) 청렴계약제 및 통합계약제 등을 도입, 지방계약의 투명성 · 효율성 제고

현재 대부분의 자치단체는 입찰부터 계약이행 등 계약 전과정에서 공정성 · 투명성 확보를 위해 「청렴계약제⁴⁾」를 시행 중이나, 지방계약법령에 그 시행 근거가 없어 대외적인 강제력 · 규범력이 미

4) 청렴계약제(Integrity pacts) : 1990년대 중반에 에콰도르가 민간기구인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자문을 받아 개발하여 최초로 시행한 제도로, 공공부문 입찰 · 계약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고 위반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함을 서약하는 부패방지 제도

약하고, 청렴계약을 위반한 경우에도 실질적인 제재의 실효성 담보가 곤란한 실정이었다.

따라서, 청렴계약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에 그 근거를 신설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계약을 해제·해지하도록 하여 실질적인 법적 구속력을 확보하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유사사업임에도 인근 자치단체와 관련되거나 같은 자치단체 내라도 서로 다른 기관에 예산이 편성된 경우에는 통합하여 계약을 하는 것이 예산절감 및 절차 간소화 등 효율적임에도 이를 활성화할 법적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그간 자치단체에서 활용이 저조한 실정이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에 서로 다른 자치단체(기관)에서 예산이 각각 편성되어 있는 경우*에도 통합하여 입찰 및 계약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고 동일 자치단체 내에서도 예산과목과 사업내용이 각각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도 서로 다른 자치단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통합계약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 (대상 예시) 자치단체(A)+자치단체(B), 자치단체(A)+국가기관(B)

** (대상 예시) 사업소(A)+사업소(B), 자치단체 본청(A)+자치단체 사업소(B)

또한, 현행 지방계약법령은 부정당업자 제재방법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만을 허용하고 있어 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 적격자가 1인밖에 없는 경우 해당 업체가 부정당업자로 제재되면 계약업무 수행이 곤란해지는 등 문제점이 있어 이러한 경우 과징금 부과로 갈음할 수 있게 제도개선할 예정이다.

그 밖에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활용한 전자계약을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무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며, 지방계약의 업무처리과정에서 전문기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지방계약의 투명성,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시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3) 자치단체 발주사업의 ‘공정사회·친서민’ 정책 지원기능 강화

지난 2008년이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 각 분야의 노력으로 경제성장을 등 각종 경제지표가 개

선되고 있으며, 지방계약분야도 이의 일환으로 그간 신속한 ‘지방재정조기집행’을 위한 선금지급 범위의 확대, 대금의 신속한 지급 등을 역점적으로 추진하였다.

하지만, 구들장을 지퍼도 아랫목은 금방 따뜻해지지만 윗목은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경기호전의 조짐을 지역 중소기업이나 서민들은 아직도 체감하기 어렵다는 반응도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공정사회 · 친서민’ 과제를 작년 하반기부터 추진 중으로 지방계약분야도 내실있는 제도개선을 금년에 본격 추진할 예정으로 있다.

우선, 입찰참여시 과도한 자격제한으로 신생 · 영세업체가 참여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사례가 최소화 되도록 불필요한 참여 제한요소를 폐지 · 완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실적제한은 시공경험이 꼭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하도록 하고, 특허 · 신기술 제한은 객관적 심사를 통해 설계서 등에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대부분 자치단체에서 입 · 낙찰방식으로 가격위주의 적격심사제를 운용 중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창의력과 기술력이 우수한 업체가 우대받을 수 있도록 가격 · 시공능력을 같이 고려하는 최적 가치 낙찰제(value for money)를 금년에 시범 운영하고 그 성과를 분석하여 내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실시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장애인업체 등 사회적 약자가 최저가 입찰참여 시 입찰금액의 일정비율을 가산해 주는 입찰우대제도(bid preference)를 도입하고, 원도급자 · 하도급자가 공동으로 계약에 참여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건설공사 이외 분야도 확대하고, 해당 업체의 부도 · 파산 등으로 일용직 근로자의 임금지급이 곤란해질 경우 자치단체에서 직접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지속적인 ‘공정사회 · 친서민’ 과제를 발굴,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나. 지방재무회계제도의 활용성 제고

1)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준칙 시범운용

지방자치단체 원가회계준칙은 사업별 원가 산출을 위한 원가⁵⁾의 계산 및 배부에 관한 기준으로 2010년 12월 제정되었다. 원가회계준칙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등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를 집계하고 배부하여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보고서 작성을 위한 원가계산은 먼저 원가대상을 설정하고 그 원가대상의 직접원가에 간접원가를 합산하여 총원가를 계산한다. 그러나 사업원가를 예산수립 및 사업관리 등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해당사업을 추진하면서 얻어지는 관련 사업수익을 총원가에서 차감하여 순원가를 산출해야 한다.

따라서, 사업순원가는 총원가에서 사업수익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보고서는 자치단체 수행사업을 통합보고하기 때문에 여러 사업순원가를 모두 합산하여 관리운영비와 사업외비용을 더하고 사업외수익을 차감하여 재정운영순원가를 산출한다.

재정운영순원가는 자치단체가 해당 회계연도 동안 사업추진 및 조직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순원가로 조세 등 일반수익으로 충당해야 하는 금액을 나타내준다. 마지막으로 이 재정운영순원가에서 일반수익을 차감하면 조세 등으로 자치단체의 원가를 충당하고 남은 재정운영결과가 산출된다. < 표 1>은 원가회계 도입전후의 재정운영보고서 구조를 비교한 표이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 원가회계 적용은 2010년 결산작업을 완료한 후 일부 자치단체에서 시범적으로 적용하여 재정운영보고서를 작성할 것이다. 즉 시범 자치단체는 2010년 재무보고서를 기존대로 작성한 후 추가로 원가계산준칙을 적용하여 재정운영보고서를 작성하게 된다. 시범작성 기간 중에 원가계산준칙의 적용에 대한 문제점을 발굴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원가계산준칙 매뉴얼을 상세하게 확정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세부적인 개선과정을 거치면 전 지방자치단체에 적용가능한 원가계산방식이 확립된다. 이를 토대로 2011년 전 자치단체 시범운영을 거쳐 2012회계연도에 본격적으로 원가계산준칙을 적용한

5) 회계적으로 예산을 사전원가라고 한다면 원가회계준칙을 통해 계산한 사업별 원가는 사후원가에 해당된다.

재무보고서를 산출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주민에게도 공시될 것이다.

〈 표 1 〉 원가회계 도입전후의 재정운영보고서 구조 비교

(도입 전)		(도입 후)			
구 분	회계별	구 분	총원가	사업수익	순원가
수익		1. 사업순원가			
		2. 관리운영비*			
		3. 사업외비용			
비용		4. 사업외수익			
		5. 재정운영순원가			
		6. 일반수익			
운영차액		7. 재정운영결과(5-6)			

2) 통합결산보고체계 구축

결산보고서의 구성과 보고체계를 일원화할 계획이다. 우선, 현행 이원적인 결산보고서를 통합하되 예산회계 및 재무회계 결산서간 중복되는 채권, 채무, 공유재산 · 물품 관련 보고서는 재무보고서 부속 명세서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현 행	개 편
① 세입 · 세출결산보고서(지방재정법 §51) ② 기금결산(기금관리기본법 §8) ③ 채권현재액보고서(지방재정법시행령 §59) ④ 채무결산보고서(지방재정법시행령 §59) ⑤ 공유재산증감및현재액보고서(공유재산법 §47) ⑥ 물품증감및현재액보고서(공유재산법 §62) ⑦ 재무보고서(지방재정법 §53)	① 결산보고서 ■ 결산개요 ■ 세입 · 세출결산보고서(기금포함) ■ 재무보고서 - 재무제표 - 주식 - 필수보충정보 - 부속명세서 ■ 재정수지보고서

이를 위해서 지방재정법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결산검사제도도 아울러 개편할 계획이다. 결산보고서 구조체계를 확립하고 결산절차가 일원화할 경우 지자체 집행부에서는 다음연도 예산

편성시 전년도 결산검사 결과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의회에서도 결산내용을 일목요연하게 파악가능하고 예산회계결산서와 재무회계결산서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향후 예산과 정책에 대해 반영함으로써 결산승인의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게 된다.

다. 지방공기업 경영합리화 추진

1) 지방공기업 부채 관리 강화

2006년 이후 개발사업 확대에 따른 소요재원을 대부분 공사채 발행에 의존하여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지방공기업의 부채가 급속히 증대되는 등 지방공기업의 재무상태가 악화되어 있다. 특히, 지난해 성남시의 모라토리엄 선언이후 지방재정 위기설의 주요 요인으로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 등에서 지방공기업 부채가 거론되는 등 지방공기업의 체계적인 부채관리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 도시개발공사 부채비율: 121%(2005)→253%(2006)→260%(2007)→296%(2008)→347%(2009)

이에 따라 지방공기업의 부채 관리 강화를 더욱 강화하여 지방공기업의 재정건전성을 제고할 계획으로 우선, 지방공기업의 체계적 재무관리 유도를 위해 일정규모(광역 및 부채규모 3천억 원 이상) 공기업에 대해서 5개년 중기 재무관리계획 작성을 의무화하고 재무리스크관리 T/F팀을 운영(광역 및 부채규모 1천억 원 이상 공기업)토록 하며 지방공기업의 사업유형별 공사채 발행한도액도 축소*할 계획이다.

* 주택·토지: 순자산 10배 → 6배, 기타: 순자산 4배 → 2배

다음으로 지방공기업의 공사채 발행 승인 심사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방공기업 유형별(개발공사, 지하철), 용도별(신규 발행, 기간연장)로 공사채 발행 승인기준을 세분화하여 공사채 발행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강화하고, 특히 유동성 확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 현물출자도 제한하여 지방공기업의 실질적인 재무여건을 고려하여 공사채 발행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공사채 승인조건 이행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목적외 사용, 승인조건 이행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승인조건 미이행 등 부적합한 공사채 발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2) 성과중심의 경영평가 강화로 지방공기업 체질 개선

적자이거나 부채가 증가한 공기업에 대하여 성과급을 과다 지급하는 등 지방공기업 방만 운영 문제 또한 국정감사, 감사원감사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성과중심의 경영평가를 강화하여 건전한 지방공기업 운영을 유도할 계획이다. 우선 경영평가지 경영성과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 평가지표 중 영업수지비율 및 부채비율 비중을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 영업수지 비율 (지하철 10점, 도시개발공사 15점), 부채비율(5점→10점)

또한 평가등급을 현행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여 우수·부실기업 선별기능을 강화하여 평가등급(5단계)별로 성과급을 지급토록 하여 성과급 차등 지급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 (평가등급) 3단계 : 우수, 보통, 미흡 ⇒ (개선) 5단계 : 가, 나, 다, 라, 마

* (성과급) 3단계 : 0~300%(단계별 100% 차이) ⇒(개선) 5단계 : 0~300%(단계별 40% 차이)

3) 공기업 경영 안정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최근 공기업 설립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공기업에 대한 체계화된 경영지도가 미흡한 실정이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광역단위 30개 공사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올해 점검 결과에 따른 경영개선방안을 제시하여 경영건전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신설공기업 등 경영안정화가 필요한 기관에 대한 컨설팅을 통해 부진사항을 시정하고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부실요인을 사전 방지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건실한 공기업

을 운영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공기업 컨설팅은 컨설팅 경력이 풍부한 교수와 민간컨설팅회사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대상 공기업의 사업유형·특성별 경영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경영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며 건전한 경영체계 정착을 위해 2~3년간 지속적으로 추적 관리·지원할 계획이다.

4) 지방공기업 구조조정의 차질없는 마무리

지난해, 지방공기업선진화방안에 따라 지방공사·공단 26개 기관 및 3섹터 법인 9개 기관에 대하여 경영진단을 실시하여, 청산 통합, 사업축소 등 경영개선방안을 마련(2010. 4월)하여 강력한 구조조정을 추진 중에 있다.

◀ 경영개선방안 ▶

- ◆ 청산 : 사업전망 불투명, 경영악화가 예상되는 7개 기업
- ◆ 통합 : 동일 기초자치단체 내 중복적 성격의 10개 기업(→ 5개 기업)
- ◆ 조건부 청산 : 민간영역과의 충돌이 우려되는 2개 기업
 - 사업다변화 · 흑자 경영 달성 목표 부여, 미이행시 청산
- ◆ 자체 경영개선 : 재무구조 악화 우려가 있는 16개 기업

올해는 해당공기업별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계획이다.

IV. 맺음말

이상에서 지방회계 및 지방공기업의 2011년 운용방향에 대해 설명을 하였다. 지방계약 전과정 공개 등 지방계약제도 선진화 과제 추진은 지난 2006년 「지방계약법」이 시행된 이후 지난 5년 여간 지방계약제도가 안정화 단계에 접어든 데서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현행 이원적인 예산회계·재무회계 결산서를 통합하는 통합결산보고체계를 구축하는 등 재

무회계제도의 활용성 제고를 통해 효율적이고 책임성 있는 자치단체의 재정운용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도 향상시키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

지방공기업 선진화는 지방공기업도 경영을 잘못하면 망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움으로써 명실공히 지역주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지방공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올해 역점적으로 추진할 지방회계제도 및 지방공기업 선진화의 추진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하지만, 다수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어 실제 추진과정에서는 여러 난관도 예견되고 있다. 서로가 눈 앞의 작은 이익보다는 선진화가 완료된 후의 미래상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혜가 요구되면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협조와 지원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회계제도 및 지방공기업 선진화방안을 자치단체는 물론 지방공기업, 관련업계, 유관기관 그리고 지역주민들과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면서 안정적으로 정착시킬 계획이며, 이러한 노력이 지방회계 및 지방공기업 발전, 나아가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용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본다. ☺

